

전북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사 운영규정

제정 98. 9. 23 훈령 제723호	개정05. 7. 8 훈령 제995호
개정 00. 1. 27 훈령 제773호	개정08. 12. 17 훈령 제1240호
개정 00. 12. 1 훈령 제806호	개정10. 10. 20 훈령 제1389호
개정 01. 2. 1 훈령 제812호	개정11. 10. 19 훈령 제1471호
개정 01. 8. 29 규칙 제823호	개정11. 12. 1 훈령 제1479호
개정 02. 4. 12 훈령 제883호	개정12. 2. 27 훈령 제1516호
개정 03. 2. 27 훈령 제919호	개정12. 9. 21 훈령 제1578호
개정04. 1. 17 훈령 제944호	개정15. 11. 2 훈령 제1876호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학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01. 2. 1, 삭제)

제 3조(전공변경) 전공변경은 동일학과 내에 한하며 공통과목의 학점만을 인정하고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전공변경을 할 수 없다.

제 2 장 입 학

제 4조(일반전형) 일반전형의 필답고사 과목은 전공과목과 영어로 한다.(다만, 교육대학원은 영어를 제외한다)(08.12.17)

제 5조(구술고사) 구술고사는 연구수행능력·소양·품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소정양식에 따라 A·B·C·D로 구분 평가하되, C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 6조(특별전형) ①입학전형에 있어서 각 특수대학원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특별전형 대상자의 자격기준·전형방법 및 선발인원 등은 해당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 3 장 성적평가와 과목이수

제 7조(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은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및 연구보고서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교과목별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12.02.27)

등 급	평 점	비고(100점 만점 기준)
A ⁺	4.5	95 ~ 100
A ⁰	4.0	90 ~ 94
B ⁺	3.5	85 ~ 89
B ⁰	3.0	80 ~ 84
C ⁺	2.5	75 ~ 79
C ⁰	2.0	70 ~ 74
F	0	70점 미만

③ (삭제, 03. 2.27)

④매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된 교과목의 성적은 0점으로 처리한다.

⑤학과시험은 매학기 종료시 교과목별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조(이수학점) ①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학칙 제14조 제 1항에 의하며, 연구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각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정한다.

제 9조(교원자격증 취득조건 및 교직과목이수영역)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영역의 교직과목을 11과목(2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한다.(01. 8. 29, 08.12.17)

제10조(학점인정) ①특수대학원 학생이 타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 후 1주일 이내에 소정의 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학점은 학기 당 6학점 이내로 하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이내에서 이수과목 및 학점을 인정한다.(신설 04. 1.17)

③특수대학원 학생 중 외국 대학(교)의 대학원에 유학한 자는 유학기간 중 취득한

학점을 이 특수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항변경 04. 1.17)

1.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이수과목 및 학점을 인정(03. 2.27)
2. 유학기간은 수업연한에 산입하되, 학점 취득을 위한 유학이 아닐 때에는 휴학 처리(03. 2.27)
3. 유학기간 중에도 학기별 이수증명서와 학점인정조서에 의하여 인정(03. 2.27)
4.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03. 2.27)

제11조(선수과목) ① 학사과정의 전공과 상이한 학과에 입학한 자에게는 해당학과 (전공)의 결정에 의하여 필요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육대학원은 전공주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공 및 교직의 선수과목은 매 학기 4학점 총 20학점 이내에서 별도로 학부에서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08.12.17)

제12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그 전공분야가 일치하는 교수, 부교수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로 한다.(12.09.21)

제 4 장 학위논문(보고서)지도 및 작성

제13조(논문작성계획서 제출) 논문제출 예정자는 논문제출 6개월(교육대학원은 1년) 전에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학기에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였던 자의 논문작성계획서 제출시한은 3개월 전까지로 하고,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에 지도교수의 추천 및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00.01.27, 02.04.12, 10.10.20, 15.11.02)

제14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제출 예정자의 신청과 학과(전공)주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속 특수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15조(논문지도)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작성의 전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16조(논문심사료)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심사용 논문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구비서류) 심사용 논문제출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 논문심사신청서 1부
2. 지도교수의 논문제출 승인서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18조(학위논문 제출시기) 심사용 논문 및 공개발표용 요약서는 5월과 11월중에 제출하고, 심사 완료된 논문은 6월말과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논문 최종 원문파일을 도서관홈페이지의 학위논문제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학위논문제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05. 7.8)

제19조(학위논문 작성요령) 학위논문은 다음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1. 심사용 논문(3부)

- 가. B5판(가로 182mm×세로 257mm)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문인 경우에는 외국어로, 외국어인 경우에는 국문으로 그 요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개발표용 요약서 (부)

A4판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 완료된 논문(5부, 교육대학원은 6부)

가. 국문 또는 외국어로 하고, 인쇄는 워드프로세서로 하며 횡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B5판(가로 182mm×세로 257mm)으로 제본하고, 회색 연질 표지로 한다.

다. 논문 구성 순서

- (1) 표지 (별지서식 1)
- (2) 내표지 (별지서식 2)
- (3) 제출서 (별지서식 3)
- (4) 인준서 (별지서식 4)
- (5) 목차
- (6) 요지(외국어 또는 국문)
- (7) 본문
- (8) 참고문헌
- (9) 부록

제 5 장 학위논문심사

제20조(논문심사) ①학칙 제41조에 의한 논문심사는 심사용 논문 제출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논문심사 위원장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합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특수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03. 2.27)

제21조(공개발표) 논문제출자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지정한 일시에 논문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03. 2.27)

부 칙(98. 9. 23 훈령 제723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전북대학교경영대학원학사운영규정(96. 7. 26 훈령 제646호)·전북대학교교육대학원학사운영규정(96. 11. 13 훈령 제650호)·전북대학교농업개발대학원학사운영규정(94. 11. 21 훈령 제604호)·전북대학교산업기술대학원학사운영규정(97. 3. 5 훈령 제658호)·전북대학교산업보건대학원학사운영규정(95. 4. 18 훈령 제613호)·전북대학교정보과학대학원학사운영규정(94. 5. 31 훈령 제596호)·전북대학교행정대학원학사운영규정(91. 3. 13 훈령 제510호) 및 전북대학교환경대학원학사운영규정(97. 3. 5 훈령 제659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경과조치) 1997학년도 이전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자에게는 개정 전 학사운영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학생에게는 개정전 교육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8조를 적용한다.

제 4 조(경과조치) 1997학년도 이전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휴학 후 계절수업에 복학할 수 없는 자중 2000학년도 후기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1998학년도 신입생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00. 1. 27. 훈령 제77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12. 1 훈령 제80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 2. 1 훈령 제81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 8. 29 규칙 제 23호)

이규정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4. 12 훈령 제883호)

이 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2. 27 훈령 제9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1. 17 훈령 제94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7. 8 훈령 제99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12. 17 훈령 제1240호)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10. 20 훈령 제138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10. 19 훈령 제147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12. 01 훈령 제147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2. 27 훈령 제151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9. 21 훈령 제157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11. 2 훈령 제18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4장 제목”과 “제13조”의 개정내용은 2015년 8월
수료자 및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별지서식 1]

		版 크기 B5版(182mm×257mm)	
체	30mm	碩 士 學 位 論 文	5mm
		30mm	2.5mm
목	8mm 題 目		2號
	35mm	15mm	35mm
년 월 일	5mm 5mm 5mm		
	5mm 부 題 目		4號
성	69mm		
	(학위수여 예정년월일)		
평	70mm 20 年 月 日		4號
	20mm		
		6mm 全 北 大 學 校 ○ ○ 大 學 院	
		10mm	
		學 科 (專 攻) 5mm	
		4號	
		10mm	
		-6mm- 姓 [] [] [] [] 名	
		3號	
		68mm 35mm 68mm	
		20mm	

[별지서식 2]

60mm

제	목	2號
---	---	----

— 부 체 목 — 4號

— 英 文 — 4號

— 영 문 부 체 목 — 4號

20 年 月 日 4號

(학위수여 예정년월일)

全北大學校 ○○大學院 3號

○ ○ 學科(專攻) 4號

姓 名 3號

30mm

[별지서식 3]

60mm

제 목 2號

— 부 제 목 — 4號

指導教授 ○ ○ ○ 4號

이 論文을 ○○○ (학위명) 碩士 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4號

20 年 月 日 4號

(심사용 논문 제출 년월일)

全北大學校 ○○大學院 3號

○ ○ 學科(專攻) 4號

姓 名 3號

30mm

[별지서식 4]

○○○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20 年 月 日
(인준 년월일)

全北大學校 ○○大學院